Tenancy Services



보딩 하우스에 살고 계세요? 자신의 권리를 알아둡시다!

- 주택임차관리청 웹사이트 방문: www.tenancy.govt.nz/tenants-boarding-houses
- 또는 전화 0800 TENANCY (0800 836 262)



보딩 하우스란?

- > 방이 하나 이상 있고
- > 세입자들이 사용할 공용 시설이 있고
- 동시에 적어도 6명 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,
 또는 그러한 의도로 운영되는 주거용 숙소



보딩 하우스 임차란?

적어도 28일 이상 지속되거나 그럴 예정인 보딩 하우스의 임차를 말하며, 세입자는:

- > 자신의 숙실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
- > 공용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보딩 하우스 집 주인의 의무:

- 방은 임차가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의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.
- 공용 시설은 항상 합리적인 수준의 청결한 상태여야 합니다.
-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합니다.
- 임차료를 올릴 때는 적어도 28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.
- > 화재 경보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> 모든 건물 요건과 보건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주: 주택임차법(1986)은 거주 예정 기간이 28일 미만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무료 법률 상담소와 시민 자문 봉사실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보딩 하우스 세입자를 위한 11가지 안내 정보

- 1 자신의 권리와 의무, 그리고 주택임차관리청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(뒷면 참조).
- 2 서면 임차 계약서를 받아두세요.
- 3 하우스 내규를 준수하세요.
- 4 현금으로 임차료나 본드를 낼 경우에는 항상 영수증을 받아두세요.
- 5. 제때 임차료를 내세요.
- 수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집 주인에게 말하세요. 6.
- 7. 집 주인은 특정한 경우에만 세입자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
- 8. 이사를 나가고자 할 때는 48 시간 전에 집 주인에게 통지하세요.
- 9 집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때는 정해진 기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.
- 10. 대부분의 경우, 집 주인은 28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 임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11. 다른 세입자의 평화롭고 편안한 일상이나 사생활을 방해하지 마세요.